

서울 행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64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원 고 여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피 고 관세청장
소송수행자 조용지, 이하철, 윤홍철
변론종결 2025. 2. 14.
판결선고 2025. 3. 14.

주 문

1. 피고가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4. 3. 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헌법」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을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즉 대한민국이 2023년 수출·수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10단위 품목번호) 총액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❷ 대한민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와 동등·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국방 및 방위사업 영역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전략무기·특화무기·취약분야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기류는 그 특성상 수출입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물품 단가, 해외거래처 등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방위물자와 관련된 방위력 약화를 초래하며,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무기류 수출입 규모 등이 외교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 내지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운
판사 정한영
판사 조약돌

별지1

▶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 1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분류에 따른 대한민국의 2023년 국가별 HS 코드 93(품목분류표상 93류) 수출입 실적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